

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「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」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과, 지역보건법 제11조 4호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원리 방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,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과 주민 참여를 위한 「건강협의체 위원회」를 구성하고 이에 관련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(안 제3조)
- 나. 센터의 업무 및 기능(안 제4조)
- 다. 건강협의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9조)
- 라. 건강협의체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(안 제11조)
- 마. 건강협의체 운영위원회 회의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역보건법 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

지역보건법 제14조(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0. 10. 19. ~ 2020. 11. 8.) 결과, 특이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(기획실-12923, 2020. 10. 19.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실-12923, 2020. 10. 19.)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반영(복지과-59812, 2020. 10. 13)
- 5) 법제심사 결과 통보 : 적정(기획실-16540, 2020. 12. 22.)

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4조에 따라 평창군민의 만성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건강생활지원센터”란 지역사회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등) ① 군수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.

② 평창군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“평창군 건강생활 지원센터”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로 한다.

③ 센터의 위치는 “평창군 진부면 석두산2길 13”으로 하고, 관할 구역은 “평창군 일원”으로 한다.

제4조(센터의 업무·시설·조직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.

1.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
2.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기초 현황조사 및 지역주민 건강 문제 파악과 자료 구축
3.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
4. 주민참여 및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
5. 지역주민 주도 건강동아리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

6. 지역사회의 건강협의체, 주민조직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
 ② 센터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실을 둔다.

1. 통합상담실
2. 건강체험관 및 전시실
3. 건강관리실(교육실, 운동처방실, 재활치료실, 영양실습실, 금연상담실)
4. 주민참여실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

③ 센터의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한 직원의 정원·복무·사무분장·보수 등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5조(운영시간 및 휴일)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(공휴일인 경우는

제외한다) 8시간으로 하되, 프로그램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② 센터의 휴일은 토요일 및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.

제2장 이용 및 사용

제6조(이용) 센터는 모든 군민과 그 외의 사람에 대하여 무료로 이용을 허용한다. 다만, 센터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2.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,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3. 그 밖에 센터의 유지 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

제7조(사용허가·신청·취소) ① 군수는 다른 기관·단체 등이 각종 건강증진관련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의 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·단체 등은 그 사용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군수는 해당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 기관·단체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은 해당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,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·취소 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(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)를 받아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 또는 변경 등 허가·신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같은 시설에 같은 사용일시가 경합 될 경우에는 센터의 설립목적 관련 사용을 우선하되, 그 밖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.
2. 허가받은 사용예정일을 앞당겨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사용예정자가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.

⑤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사를 진행한 때
2.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때
3.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

제8조(사용자의 의무)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를 자기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, 사용을 마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
제3장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협의체

제9조(설치·구성)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는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협의체 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
2.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3.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
4. 실무네트워크 건강위원 주민조직 발굴
5.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
6.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

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과반수는 「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건강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건강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④ 협의체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1. 보건의료원장
2.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위원

3. 의사협회, 약사협회, 장애인복지센터, 노인회 등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
4.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.

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,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(互選)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회의 운영)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최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
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④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, 이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.

제13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.

1.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

3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
4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

5. 이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

제14조(실무네트워크 주민조직 구성 운영) ①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 주민조직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네트워크 주민조직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

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- 제16조(운영지원)** ① 군수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군수는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

(제7조제2항 관련)

신청인 또는 단체명	주 소					
	단 체 명				연락처	사무실 : 자 택 :
	성 명 (대표자)		성별		핸드폰	
행 사 명						
사용목적 및 내용						
사 용 시 설		시설명				
사용기간	년 월 일 년 월 일 (일간)	시부터 시까지	사 용 횟 수	오전 : 회 오후 : 회 야간 : 회		
첨부서류	행사 계획서 1부					
<p>「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>평창군수 귀하</p>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사용허가 (변경·취소)신청서

(제7조제3항 관련)

신청인	주소	우편번호 :			
	단체명	전화	사무실		
	대표자		자택		
사용시설					
행사명					
변경사항	구분	변경 전	변경 후		
	사용일시				
	사용시설				
	기타				
변경사유 (취소사유)					
「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승인 (변경·취소)를 신청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신청인 :		(서명 또는 날인)			
평창군수 귀하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회 의 록

(제12조제4항 관련)

일시					
장소					
안건					
연번	직위	성별	성명	비고	
1	위원장				
2	위원				
3	위원				
4	위원				
5	위원				
6	위원				
7	위원				
8	위원				
9	위원				
10	위원				
11	위원				
12	위원				
13	위원				
14	위원				
15	위원				
간사	센터장				
<u>심의안건 주요내용 및 결과</u>					

[붙임1]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역보건법

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
2.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, 조사·연구 및 평가
3. 보건의료인 및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·관리·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·관리
4.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
 - 가. 국민건강증진·구강건강·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
 - 나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
 - 다.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·증진
 - 라.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·증진
 - 마.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
 - 바.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
 - 사.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

제14조(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□ 지역보건법 시행령

제11조(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) ① 법 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·면·동(보건소가 설치된 읍·면·동은 제외한다)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.

제12조(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기준) ① ~ ② 생략

③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.

제15조(건강생활지원센터장)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,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.

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[붙임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영옥
연락처	(033) 330 - 4820